

「PC 통신」 선거운동의 유의점

– 6월 지방선거에서 「PC통신」의 활용을 전망하며

신 각 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는 정보사회에 걸맞게 PC통신이 선거운동에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새로운 정치활동형태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적 유의사항을 고찰해본다.

– 편집자주 –

정보사회와 선거운동방식의 변화

오는 6월 27일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서 컴퓨터(PC)통신이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PC통신을 통한 선거운동은 종래에 라디오, TV등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의 정견만을 듣는 '일방향' 방식과 다르다. 선거권자와 후보자간에 직접 의견을 주고 받는 형식의 '쌍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 후보자와 보다 밀접히 접근할 수 있다.

특히 국내 PC통신 가입회원들이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층이어서 이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쏟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 데이콤은 천리안에 「온라인 선거운동 광장」을 개설, 지방자치선거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나우콤과 한국PC도 나우누리(정치마당)와 하이텔(선거마당)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도록 자료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PC통신업체에서는 4월부터 선거관련 일반정보 예컨대, 공직선거법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6월 14일부터 선거운동기간에는 후보자의 경력·공약 등 후보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들은 PC통신 전자게시판(BBS)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연설문, 기타 홍보물 등 관련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

PC통신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외국에서는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라는 새로운 정치활동 형태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95. 3. 22 조선일보 보도).

또한 컴퓨터통신은 생생한 여론을 즉각 전달하고, 후보자 또는 정책담당자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를 컴퓨터가 부활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PC통신이 선거운동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의 역기능도 발견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허무맹랑한 악성정보가 신속히 전국적인 유통문제로 심각하다. 지난 92년에 미국 하원의원에 출마한 어떤 후보는 성인용 포르노 테이프를 빌려본 사실이 밝혀져 낙선하였다. 상대방 후보가 컴퓨터기록을 빼내서 PC통신으로 유포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PC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라는 새로운 정치활동형태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적 유의사항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PC통신 사업자,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PC통신사업자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엄정 중립, 공정의 의무

공직선거법 제8조의 규정을 보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는 후보자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공정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PC통신사업을 경영, 관리하는 자나 또는 프로그램·데이터 등을 편집, 송신하는 자가 편파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정 후보에 대하여 지나치게 표나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다른 경쟁 후보에게 불리하게 할 경우는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 통신매체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음을 절감하고 사업자·종업원 모두가 공정성·중립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허위논평, 송신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96조에는 「방송·신문, 통신, 잡

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라 규정하여 허위사실의 송신, 보도를 금지시키고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PC통신의 선거운동 코너 또는 전자게시판등에 수록·제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후보자에 대한 명예·프라이버시 침해 금지

PC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명예와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이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에서 이에 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분·경력·인격·재산·행위 또는 그 소속 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라고 허위사실 유포나 사생활침해에 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강남의 모후보에 대한 사생활을 PC통신에 유포한 사실이 있었다. 전자게시판에 특정후보의 인격, 재산형성관계, 남녀관계등 사생활을 공연히 유포시킴으로써 피해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이 규정은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PC통신사업자는 물론, 가입회원, 기타 이용자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청소년 학생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지나치게 격하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제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미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시장에 입후보하겠다고 선언한 박○○, 김○○, 이○○등 특정인을 상대로 인신공격성 내용을 PC통신전자게시판에 수록했다면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 부인, 아들 딸,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됨을 알아야 한다(법 제251조).

명예와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산망법등에 의해서도 처벌되지만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단속과 처벌이 강화됨으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PC통신 모의 투표, 인기투표등 공표금지

PC통신회원들 상호간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당의 김XX씨에 대하여 인기투표 또는 모의투표를 제안할 수도 있다.

또한 PC통신회원 박XX씨는 자기 사무실 직원 100명을 상대로 서울시장 모의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도 금지되며, 그 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다음과 같은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 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위의 규정은 인기투표, 모의투표 그밖에 여론조사를 금지하고, 또한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PC통신회원끼리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조사 형식으로 그 통계치(결과)를 PC통신에 게재할 경우, 이 규정에 저촉된다. PC통신을 통한 송신은 (공표)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PC통신 동호회모임등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 금지 전국의 PC통신회원들끼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들을 교환하는 PC모임(동호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청소년들끼리 「동호회」 회원을 모집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건설적인 의견과 열띤 토론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에는 동호회등 「단체명의」로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시, 또는 권유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87조의 규정을 보면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의 규정에서 어떤 단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단체명의의 지지·반대 또는 권유할 수 없다」의 취지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판단은 선거권자 개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며 어떤 단체가 권유, 지지, 반대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 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총(20세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뿐만 아니라, 청소년총(20세미만)으로 구성된 PC동호인 모임도 단체에 해당된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특히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다.

맺음말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자치선거는 정보사회에 걸맞게 PC통신등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가장 과학적이고 공정하며 경비가 절감되는 선거운동이었으면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과 특히 우리나라 컴퓨터 애호가들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PC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 각 정당들은 물론 PC통신가입회원들 모두가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지지·반대·비판함에 있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PC통신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

치고 국민들 사이에 긍정적인 효과를 심어주게 된다면, 우리나라 정보화추진에 획기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PC통신사업자, 직원은 그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공정성·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모르고 철없는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특정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을 PC통신선거운동 자료실이나 기타 전자게시판에 수

록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사전교육,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PC통신사업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5가지 사항이외도 「공직선거법」에서는 더 많은 금지규정이 있다. 중요 사항만을 지면관계로 소개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현행법령 데이터베이스」(천리안송신)을 통해서 참고하기 바란다. ◊

근 착 자 료

| NO | 자 료 명 | 발 행 처 |
|----|---------------------------|--------------|
| 1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2 | '95년 정부·공공부문 전산수요계획 설명회 | 정보통신부 |
| 3 | 통신산업육성 조사연구 | 한국통신산업협회 |
| 4 | CD-ROM 응용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 | 과학기술처 |
| 5 | 국내전파산업체 기술개발현황 조사연구 | 한국전파진흥협회 |
| 6 | 전파산업 지원방안연구 | 한국전파진흥협회 |
| 7 | 멀티미디어시대의 정보전략 | 한국통신 |
| 8 | 통신산업육성조사연구 | 한국통신학회 |
| 9 | '94 정보통신통계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 10 | 경제정책자료목록 | 재정경제원 |
| 11 | 제3회 EDI시스템기술 워크샵 | 한국통신 |
| 12 | HCI 95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한국정보과학회 |
| 13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통진흥사업에 관한 연구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 14 | 신 지역정보화의 사고방식·추진방법 | 한국정보문화센터 |